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설치 및 운영 등)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현장지도·상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임.
- 안 제6조(지원대상)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안 제7조(사무의 위탁)부터 안 제9조(위탁의 해지)까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는 구청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 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
----------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우경란, 이성수, 유승용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나. 지원대상(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